

제9강 관세정책과 관세율제도

강 의 : 관세청 정재완 박사



국세공무원교육원

<주요 강의내용>

1. 관세정책과 비관세정책
2. 관세율의 종류
3. 기본관세
4. 국제협력관세(양허관세)
5. 일반특혜관세(GSP)
6. 덤핑방지관세와 상계관세
7. 긴급(특정국물품긴급)관세
8. 특별긴급관세
9. 관세율의 적용순서

1. 관세정책과 비관세정책

- 무역정책은 관세정책과 비관세정책으로 구성
 - 관세정책 : 관세 부과 정도와 그 구조로서 무역에 영향
 - 비관세정책 : 수출입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이나 금융, 행정상 수단을 동원하여 무역에 영향

- 관세정책의 수단
 - 관세율정책 : 관세율을 올리거나 낮추는 것으로, 또는 그 구조를 변경하는 것으로 특정한 정책목표를 추구
 - 보세정책 : 관세부과의 유보로 특정한 정책목표를 추구
 - 감면세 정책 : 정해진 관세율을 특정 정책목표를 위해 경감
 - 분할납부정책 : 정해진 관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함
 - 환급정책 : 이미 징수된 관세를 특정 정책목표를 위해 돌려 줌

2. 관세율의 종류

종 류	공포형태	종 류	공포형태
기본관세	관세법	일반특혜관세	대통령령
잠정관세	관세법시행령	계절관세	재정경제부령
편의관세	관세법시행령	상계관세	재정경제부령
조정관세	대통령령	덤핑방지관세	재정경제부령
할당관세	대통령령	긴급관세	재정경제부령
보복관세	대통령령	특정국물품긴급관세	재정경제부령
국제협력관세	대통령령	특별긴급관세	재정경제부령

3. 기본관세

- 수입 또는 수출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그 나라의 주권에 해당
- 대부분의 나라는 법률로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을 정하여 적용(우리나라는 수입물품을 3,063개로 구분하여 기본관세를 설정)
- ◆ 현행 우리나라의 관세율은 기초원자재의 관세율은 낮고 중간재와 완제품의 관세율은 높은 ‘산업내 경사관세’구조와, 동일한 가공단계에서는 산업이 달라도 같은 관세율 수준을 유지하는 ‘산업간 균등관세율’ 구조
- ◆ WTO는 다자간 협상을 통해 회원국의 관세율 수준을 최대한 낮추거나 철폐하는 것으로 자유무역을 추구

4. 국제협력관세(양허관세)

- 각국이 법으로 정한 기본관세율과는 별개로 다자간 또는 양자간 협상에 의해 양허한 관세율
- 양허관세율은 기본관세율 보다 높거나 같게 양허한 경우에는 실제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각국의 관세율 인상예 있어 사실상 가이드 라인으로서 의미
 - 기본관세율 보다 낮게 양허한 경우는 실효성을 가지고 적용
- 다만, UR결과 시장이 개방된 농림축산물에 대해 적용되는 양허관세는 국내외 가격차이 상당을 관세화 하여 매우 높은 관세율로 설정되고, 실효성을 가지는 특징

5. 일반특혜관세(GSP)

- ◆ 일반특혜관세(GSP)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부여하는 특혜의 성격
- ◆ WTO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예외 인정규정을 통해 GSP 적용을 허용
- ◆ 우리나라는 2000년 부터 48개 최빈개발도상국에서 수입되는 80개 품목에 무관세를 적용
- 일반특혜관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를 할 때 원산지 증명서(C/O)의 제출이 필요

6. 덤핑관세와 상계관세

- 이 두가지는 불공정무역을 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
- 덤핑방지관세 : 외국상품이 당해 물품의 공급국에서 소비되는 동종물품의 통상 거래가격을 의미하는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부과
 - 덤핑 차액만큼을 기본관세에 추가하여 과세
- 상계관세 : 외국에서 생산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부과
 - 당해 보조금 또는 장려금액만큼을 기본관세에 추가하여 과세

7. 긴급(특정국물품긴급)관세

- 긴급관세 : 특정상품의 수입증가로 인해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부과
- 긴급관세 부과를 위해서는 WTO 긴급수입제한조치 위원회에 통보하고, 이러한 조치로 피해를 보는 이해당사국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하여야 함
- 특정국물품긴급관세 : 중국이 WTO 가입조건으로 2013.12.10. 까지 중국산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피해에 별도의 긴급관세 부과를 인정함에 따라 요건이 충족될 경우 부과가 가능한 긴급관세

8. 특별긴급관세

- ❑ UR결과 시장을 개방한 농림축산물에 그 대상
- ❑ 이러한 물품의 수입량이 급증하거나(물량기준), 수입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하락한 경우(가격기준) 부과 가능
- **물량기준 적용** : 양허세율의 1/3까지 추가하여 과세가능
- **가격기준 적용** : 가격차이에 따라 하락가격의 최고 90%까지 추가관세 부과 가능

9. 관세율의 적용순서

1순위 : 산업보호 목적의 관세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특별긴급관세, 상계관세, 특정국물품긴급관세

2순위 : 교역촉진 목적의 관세

국제협력관세(FTA 등), 편익관세(3순위 내지 7순위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적용)

농림축산물양허관세(세율이 높은 경우에도 5, 6보다 우선

3순위 : 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할당관세는 4순위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적용)

4순위 : 일반특혜관세

5순위 :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

6순위 : 잠정관세

7순위 : 기본관세